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2052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전수려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이동근, 조동화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합55831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9. 접수 제83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6행의 “이는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바”를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상 ‘보증서 발급번호 · 발급일자, 보증금액’은 기존 보증서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데, 결국 이러한 2020. 5. 22.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는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이 아닌 제1, 2차 신용보증약정 중 일부 보증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바”로 바꾼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3행의 ”23호증“ 뒤에 ”,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쪽 표 아래 6행의 ”이르게 된 점“ 뒤에 ”, B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박 매입량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회사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실제 추정박 출고물량을 기초로 추정한 B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업손실이 약 2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쪽 1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 4, 5, 6, 9,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추정박의 추가 공급 없이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20. 5. 23., 2020. 6. 1.에도 피고에게 거듭하여 거래관계를 지속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를 계속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기존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반한다.
- ② 피고와 B 사이의 공급계약관계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B의 창고로 주정박을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B이 이미 창고에 입고된 물량 중에서 '피고에게 통보한 인수 물량'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시하는 2020. 5. 29.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으로 피고가 B에 2020. 5. 29. 주정박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B의 5월 입고내역에 따르면 2020. 5. 16. 이후로는 B의 창고에 주정박이 입고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의 B에 대한 주정박 공급은 2020. 5. 16. 이후로 중단되었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주정박 등 사료 원료를 추가로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는 2020. 12. 4. 원고에게 '(B이) 미지급 물품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은 어려우나 분할하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본건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B이 주정박 반출로 인한 피고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주정박 공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영현, 판사 조 인